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13. 07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건축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건축심의의 운영상 불합리한 일부 미비점의 보완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문정리 및 상황변화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안 제3조)

- 위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해 위촉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함.
- 위원의 장기간 연임을 통한 이해관계자 유착소지 차단을 위해 연임 횟수를 제한토록 함.
-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도록 제척시킴
- 건축심의 결과 및 회의록을 7일 이내 군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토록 함.

나. 건축 심의 등에 관한 기준 적용완화(안 제3조의2)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과 단순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생략토록 완화함.
- 건축심의 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최토록 함.
- 재심의 경우 매번 새로운 조건부과로 부결 또는 재심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함.

제 출 자	민 원 과
제출 연월일	2013. 7. .

법무통계담당 심사필

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조항 확대(안 제5조 제4호)

- 법령개정으로 인해 기존 한옥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게 될 경우 개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안 제26조)

-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기준에 있어, 건축물 높이 4미터 이하부분은 1미터 이상, 8미터 이하부분은 2미터이상 띄워야 하던 것을, 9미터 이하부분은 1.5미터 이상 띄우도록 완화 함.

3. 내용 : 붙임 1.

4.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붙임 참조
- 다. 입법예고 결과 : 없음
- 라. 성별영향 검토서 : 붙임 참조
- 마.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내용 붙임 참조)
- 바.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사. 조례규칙심의회
 - 일 시 : 2013. 07. 03.
 - 심의결과 : 원안가결

고령군 조례 제 호

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건축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 제1항 및 제5항, 영 제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건축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지방건축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
2. 군수가 발의하는 건축조례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3.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및 대수선(영제3조의2 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한다)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증·개축이나 법 제19조의 용도변경 및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건축물의 건축
 - 가.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 나.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다. 주거용 건축물이 20세대 이상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
 - 라.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오피스텔
5. 그 밖에 법·영·시행규칙이나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하도록 한 사항

제3조제3항 중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 건축(계획, 구조, 설비, 방재, 에너지, 건축환경, 시공 등),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경관, 교통 및

정보기술, 조경,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성이 60 퍼센트를 넘지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 전에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연임 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건상 새로이 위원을 위촉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제8항· 제11항 및 제14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계,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 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⑯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⑰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의2 제목 “(건축심의에 관한 기준)을 “(건축심의 등에 관한 기준)”으로 하고, 본문 전단 중 “영제5조제4항 각 호의”를 “영제5조의5 제1항 각호 및 제3조 제1항 각호의”로 하고, 제1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제5조의5 제1항 제4호 건축물로써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심의를 받은 건축물
4.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심의 등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 나. 법 제16조 제2항 및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 할 수 있는 변경
 - 다.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 노대, 옥상, 난간 벽 등 경미한 외장변경
 - 라. 건축물의 주변경관 등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단순한 위치이동

제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

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 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 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하며, 해당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를 포함한다)시 까지 당사자와 접촉을 하여서는 안 된다.
- ④ 건축주 · 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심의사항 중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 및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 식별이 가능한 성명은 제외한다.
- ⑧ 재심의를 경우 매번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여 부결 또는 재심의를 반복 하여서는 안 된다.
- ⑨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관계기관 ·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⑩ 제7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26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제26조제2항 본문내용 중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를 “20미터 이상 도로(자동차 · 보행자 ·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사이에 도시 · 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은 조례가 개정된 후 건축허가(변경허가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건축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일까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보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5조제4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p> <p>2.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p> <p>3. 그 밖에 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p>	<p>제3조(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 제1항 및 제5항, 영 제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p> <p>1. 지방건축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p> <p>2. 군수가 발의하는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p> <p>3.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및 대수선(영제3조의2 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한다)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개축이나 법 제19조의 용도변경 및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p> <p>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건축물의 건축 가.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나.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다. 주거용건축물이 20세대 이상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 라.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오피스텔</p> <p>5. 그 밖에 법·영·시행규칙이나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p>

현 행	개 정 안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u>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 건축(계획, 구조, 설비, 방재, 에너지, 건축환경, 시공 등),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경관, 교통 및 정보기술, 조경,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수의 4분의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대학, 연구소등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u>위촉하여야 한다.</u>	④ ----- ----- ----- ----- ----- -----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 전에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 <u><단서 신설></u>	⑥ ----- ---, <u>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여건상 새로이 위원을 위촉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삭 제></u>

현행	개정안
⑨ (생략)	⑨ (현행과 같음)
⑩ (생략)	⑩ (현행과 같음)
⑪ <u>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삭제>
⑫ (생략)	⑫ (현행과 같음)
⑬ (생략)	⑬ (현행과 같음)
⑭ 영 제5조제4항제6호규정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사항의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2.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3. 주거용 건축물이 20세대 이상 포함된 주상복합용 건축물 4.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오피스텔	<삭제>
<신설>	⑮ <u>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신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u> 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3. <u>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계,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 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5. <u>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
<신설>	⑯ <u>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현행	개정안
<p align="center"><u><신설></u></p>	<p>⑩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p>제3조의2(건축심의에 관한 기준)</p> <p>① 영 제5조제4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를 생략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p>제3조의2(건축심의 등에 관한 기준)</p> <p>① 영 제5조의5 제1항 각호 및 제3조제1항 각호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심의를 받은 건축물 3.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제5조의5 제1항 제4호 건축물로써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현행	개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심의 등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나. 법 제16조 제2항 및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 할 수 있는 변경 다.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 노대, 옥상, 난간벽 등 경미한 외장변경 라. 건축물의 주변경관 등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단순한 위치이동
<p>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미리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행	개정안
③ 위원회는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할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하며, 해당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을 포함한다)시 까지 당사자와 접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심의 후 위원별 의견과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군 홈페이지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 하여야 한다.	④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⑤ 심의사항 중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 및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 식별이 가능한 성명은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⑧ 재심의의 경우 매번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여 부결 또는 재심을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⑨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⑩ 제7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신설> 5. (생략)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2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p> <p>1. <u>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u></p> <p>2. <u>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u></p> <p>3. <u>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u></p>	<p>제2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1. <u>높이 9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u></p> <p>2. <u>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u></p>
<p>②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u>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u>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 ----- ----- -----<u>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자동차 · 보행자 ·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사이에 도시 · 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u>----- -----</p>